
입 법 정 보

2017-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6
3.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7
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7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8
8.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8
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9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9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
1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3.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
1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3
16.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13
17.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4
1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19.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6
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7
2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19
22.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
23.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
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1
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22
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2
2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2
28.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3
29.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3
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3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4
3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4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5
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5
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법무부)	26
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7
3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28
3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8
39.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9
4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9
41.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9
42.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0
4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30
44.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1
4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31
46.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32
47.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2
48.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4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34
5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34
51.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35
5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53.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6
54.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6
55.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5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8
57.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9

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5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60.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41
6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41
62.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1
63.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42
6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	42
6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4
6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44
6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45
6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45
6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5
7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6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3. 3.

• 마감일자 : 2017. 3. 23.

○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행정자치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근거한 소관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고시 및 조정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32조제1항제8호, 같은조 제2항제1호·제2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으로 형성된 중요재산에 대한 임의처분시 반환 명령,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말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2)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함.

다.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안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 및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하던 것을 주사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면서 관할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까지로 확대함.

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54조제5항제3호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방조설비에 관한 관리사무를 수자원 관리 수행능력이 있는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함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3. 3. • 마감일자 : 2017. 4. 13.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439호, 2016. 12. 20. 공포) 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 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관한 인증 사후관리 조항 삭제(제13조)

3.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3. • 마감일자 : 2017. 4. 12.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 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16.5.29. 전부개정, '17.5.30. 시행) 개정(제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입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요건,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3. • 마감일자 : 2017. 4. 12.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 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16.5.29. 전부개정, '17.5.30. 시행) 개정(제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입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요건,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 특별시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3. • 마감일자 : 2017. 3. 13.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17. 3. 30. 시행)으로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되게 되어 2017. 3. 30.부터는 별도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3. 3. • 마감일자 : 2017. 3. 13.
-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정하고,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하며,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클라우드컴퓨팅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잠정가격 신고 요건 및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서 서식을 정함.

나.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함.

다.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에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을 추가(안 제43조)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라. 과세자료 제출서식 규정(안 제 79조의4 및 별지서식 제36호·제37호·제51호부터 제55호까지)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확대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신설함.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 완화(안 제85조)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을 완화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3. 3. • 마감일자 : 2017. 3. 21.
-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연간 환급한도액을 확대하려는 것임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연간 환급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

8.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3. • 마감일자 : 2017. 4. 12.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하고, 업무 처리 흐름도 삽입 등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항시설관리권(등본, 초본) 교부청구서(제2호서식), 공항시설관리

권등록부열람청구서(제3호서식) 및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을 조정함

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제5호서식)을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을 조정함

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3. 3. • 마감일자 : 2017. 3. 23.
- 합동군사대학교 임무 중 합동·연합작전의 개념에 관한 발전업무를 합동 참모본부로 이관하고, 합동교육·교리 간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해 분리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교육부와 합동군사대 학교의 합동전투발전부를 통합하여 합동참모대학 예하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3. 6. • 마감일자 : 2017. 3. 16.
-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됨(「개인정보 보호법」 ‘16.3.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식의 오류 및 형식 개선 필요로 인한 서식정비
-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서류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삭제 (본문 제2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제7호서식 중)
 - 1)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민등록표 등본은 필요 없는 서류임.
 - 2)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근거를 삭제
 - 3) 별지 서식 상에 동일하게 표기되었던 부분도 함께 수정
- 나. 신청인 제출서류(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목록 수정
 - 1) 해당 별지 서식에서 신청기업 정보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

자등록증)는 “신청인의 직접 제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중복 요구됨.

2) 이에, 법령 본문에서 규정한 바에 부합되도록, 신청인의 제출서류 목록에서 동 서류들(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동 서류를 확인하도록 중복 해소(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 참조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 서식 중) 수정

1) 별지서식 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명시된 서류 간불일치 발생

2) 이에, 동의서 상의 서류 명칭을 실제 확인 서류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도록 정정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3. 6. • 마감일자 : 2017. 3. 13.

○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대상, 설치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내통신설의 면적확보 기준 및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치장소(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1 신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상층과 각 지하층,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로서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협의한 주택 및 시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과 각 지하층, 그 외의 주택 및 시설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의 설치방법(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함.

다.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기준 완화(안 제19조제3호)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을 복합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도록 하되,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확보기준의 값을 합한 값 이상이고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외회선 설치기준(안 제24조제5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도록 하되,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절차(안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 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해당 협의를 전담하는 자를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협의 결과

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본주택 등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1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6. • 마감일자 : 2017. 4. 17.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14.6.3. 제정(’ 15.1.1. 시행)된 이후 대항개발,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434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등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13.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6. • 마감일자 : 2017. 3. 16.

-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를 법률 및 시행령으로 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6.3.29. 시행 ‘17.3.30.)사항을 반영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14. 제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3. 6. • 마감일자 : 2017. 4. 17.

-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개관(' 18년 초 예정)으로 파리 지역에 소재하는 한국교육원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또는 4·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교육원 소재 지역 개정(제14조)
 - (기존) 로스앤젤레스·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 (개정) 로스앤젤레스·파리·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15. 제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3. 6. • 마감일자 : 2017. 4. 17.
-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개관(' 18년 초 예정)으로 파리 지역에 소재하는 한국교육원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또는 4·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교육원 소재 지역 개정(제14조)
 - (기존) 로스앤젤레스·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 (개정) 로스앤젤레스·파리·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16.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3. 7. • 마감일자 : 2017. 4. 17.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 공포(법률 제14226호, 2016. 5. 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공단의 설립등기사항 및 하부조직 설치등기·변경등기·대리인 선임등기 관련 세부사항,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법 제9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탐방객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탐방프로그램 등 인증 및 지원’, ‘국립공원기본통계 작성 및 분석’ 등을 공원관리사업으로 정함

다. 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출연금 지급 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계상·출연금 예산 확정 통지·타당성 검토 및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단의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출자·출연하려는 경우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마. 자금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금차입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함

바.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신청의 기한,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사. 사업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업준비금 적립 금액의 범위 및 금액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 등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7.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3. 7.
- 마감일자 : 2017. 4. 17.

-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한 양식을 개정법률에 맞추

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구 수정(안 제3조)

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기존 자연공원의 “폐지”가 “지정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수정

나. 공원대장 작성양식 개선(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1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3. 7.

• 마감일자 : 2017. 4. 17.

○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자연공원법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시설 및 허가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원시설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안 제2조)

1) 원활한 자연공원관리 및 자연공원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공원관리 자재창고, 생물증식복원시설 등을 공원시설로 추가함

2) 어린이놀이터, 유기장 등 자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운 시설을 공원시설에서 삭제함

나. 국립공원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정부위원의 경우 소속 부처와 관련된 안건의 의결에만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을 조정함(안 제14조의2)

1) 국립공원 내 과도한 탐방로 개설로 인한 공원관리상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입지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통신시설 설치를 허용함

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을 조정함(안 제14조의3)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해상양식어업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조정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은 작물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해안·섬지역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설치를 허용함
 - 3) 관할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함
 - 4) 「자연공원법」개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임시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허가기간 등을 정함
- 마. 공원마을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허용규모를 현행 200제곱미터에서 230제곱미터(부대시설 포함)로 변경하고, 자체기능상 필요한 행위의 기준을 정함(안 제14조의4)
- 바. 법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공원보호협약의 당사자를 정함(안 제15조)
- 사. 도로구역 내에서의 안전시설설치를 신고생략사항으로 함(안 제19조)
- 아. 법 제36조에서 위임한 자연자원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함(안 제27조)
- 자.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단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 차. 법 제80조 개정으로 공원관리청의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45조)
- 카. 최근 출입금지지역 출입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19.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7. • 마감일자 : 2017. 4. 17.
-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가. 지역별·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 형평성 고려를 위한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규정에 병상을 신설(안 제2조제2항)
- 나.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을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상대평가 방법에 의료 질 평가를 추가

(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 다.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을 현행화하고,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라. 필수 진료과목 및 병상에 대한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말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3호, 제5호 및 별표 2 제3호)
- 마. 의료 질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 중 적정성 평가를 삭제하고 전 분야에 대해 의료 질 평가를 확대 적용(안 별표 1 제6호)
- 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앞당겨 시행하고, 의료 질 평가를 전분야에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처리기간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별지 제1호 서식)

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7. • 마감일자 : 2017. 3. 17.

-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치료감호가 가종료(假終了)된 사람보다 재범위험이 높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이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종료 취소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留置)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치료감호시설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치료감호 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원래 선고받은 치료감호 기간이나 연장된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된 경우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 관찰

이 시작되도록 함

나.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 신설(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치료감호 가종료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보호관찰 집행은 정지하되,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또는 가석방되는 시점에 보호관찰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함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부과(안 제33조제2항)
보호관찰 대상자에 따라 주기적으로 외래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 특수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치료감호 가종료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拘引)한 후 치료감호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를 위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인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유치허가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유치허가를 받도록 함

2)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검사의 청구에 따른 판사의 허가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마.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52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담배 등 금지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授受)·교환 또는 은닉(隱匿)한 피치료감호자,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치료감호시설에 총기·도검·폭발물·독극물·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피치료감호자와 금지물품을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하며, 금지물품은 몰수함

2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3. 7.
- 마감일자 : 2017. 4. 17.

○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하고, 육묘업 등록, 유통 묘 품질표시, 묘 분쟁조정 등 묘에 관한 관리·지원 업무와 종자검정 업무, 보급종 종자생산대행의 농업경영체 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종자산업법」이 일부개정(‘16.12.27.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육묘 교육과정 추가(안 별표1 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육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에 육묘 교육과정 추가

2)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부보급종 종자생산대행 자격 마련(안 제12조 개정)

기존 농업인과 동일하게 해당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도록 규정

3) 육묘업 등록 신청, 등록사항 변경, 재발급 규정 마련(안 제24조의2·별지 제18의2호서식·별지 제19의2호서식 신설, 안 제25조·제26조·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개정)

육묘업 등록신청서의 제출방법,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재발급신청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4)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28조·별표 4 개정)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5) 종자검정 신청, 검정항목 및 방법, 검정 수수료 등 마련(안 제33조의2·제33조의3·제33조의4·별지 제29의2호서식·별지 제29의3호서식 신설, 별표 6 개정)

종자검정의 신청방법, 검정항목, 검정방법, 검정결과서 발급, 검정 수수료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이관하고 과수 무병묘 검사항목 추가

6) 유통 묘의 품질표시 사항 신설(안 제34조제2항 신설)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때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단일품종을 판매할 경우 일괄 안내표지판을 사용토록 함

7)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변경 등의 보고 사항 신설(안 제37조의 2·별지 제29의4호서식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및 육묘업의 등록, 변경 등의 실적을 매년 1월 20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8) 육묘분쟁 해결을 위한 시험·분석, 보상청구 등의 절차 마련(안 제39조·제40조·제41조·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개정, 안 제40조의2 신설)

분쟁대상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 보상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육묘 보관서류의 대상 항목 및 방법의 세부사항 마련

22. 향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8. • 마감일자 : 2017. 4. 17.
- 「향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예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향만공사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23. 향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8. • 마감일자 : 2017. 4. 17.
- 「향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향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함(시행령 안 제2조제1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향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
- 나. 사채발행계획의 내용 및 제출 시기(시행령 안 제17조 제1항)

항만공사가 수립하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시기를 정함

다. 항만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시행령 안 제29조제2호)

항만공사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감독 범위에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라. 권한의 위임(시행령 안 제29조의2)

항만 경비·보안 업무에 관하여 항만공사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항만경비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마. 항만공사운영협의회 구성·운영(시행규칙 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8. • 마감일자 : 2017. 4. 17.

-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범죄를 정비하고, 피치료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치료기간의 기산점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3. 8. • 마감일자 : 2017. 4. 17.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1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3. 8. • 마감일자 : 2017. 4. 17.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1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3. 8. • 마감일자 : 2017. 3. 15.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6.12.2. 공포)되어 기존에 같은법 제5장에 따라 설치·운영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상하위 법령간 체계 일치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 가.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폐지(안 제21조 및 제21조의2 삭제)

- 1) 법률에 근거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이 삭제 ('16.12.2. 공포, ' 17.3.3. 시행)되어, 상하위 법령간 체계 일치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불필요하여 삭제

28.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3. 8. • 마감일자 : 2017. 4. 17.
-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9.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3. 8. • 마감일자 : 2017. 4. 17.
-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4. 18.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8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되어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칙으로 상항됨에 따라 별표 중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17.12.27일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및 관리기준 등을 협의·조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됨에 따라,

- 조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및 위원의 직급, 조정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제16조, 별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4. 21.
-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되는 정기심사가 이전심사로 구분됨에 따라 이전심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 KS인증제품의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심사 실시 (안 제16조 개정)
KS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5일 이내 이전심사를 받도록 규정
- 나.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의 증서 및 부상 서식 마련 (안 제29조 신설)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별지 제21호 내지 제26호) 규정을 신설

3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4. 21.
-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수여하는 유사포상 중 국가품질명장에 대해 대통령 명의 패 및 장관 명의증서를 수여하였으나, 현장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증서 명의를 대통령 명의로 격상하기 위한 규정 마련과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되는 정기심사를 이전심사로 구분하는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312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 구분 등에 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KS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시판품조사 방법을 보완하는 등 법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4. 1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4항제4호가 법무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교정시설 밖의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교정시설 밖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용자의 규율 및 포상에 관한 규정 등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4. 18.

-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를 받는 수형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금지물품 동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교정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등을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통보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치품 반환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영치품 반환 업무 관련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45조의2)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영치품을 보내게 하는 경우 등 민원인의 정확한 신원 확인 및 영치품 반환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편철하는 등 고유식별 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나. 서신 무봉함 제출 대상 수형자 추가(안 제65조)

법 제57조에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및 다른 경비 등급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나 이와 동등한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서신을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함

다. 휴업일 관련 규정 개선(안 제96조)

12월 31일이 휴업일로 되어 있으나 정상 일과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휴업일에서 제외함

라. 석방예정자 교정성적 통보 방식 개선(안 제143조)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4. 18.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 제도, 등록한 정보의 열람·통지 제도 및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출입국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4. 10. 13.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27호)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내용 중 진술조력인에 관한 14개 조문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순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4. 18.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 제도, 등록한 정보의 열람·통지 제도 및 신상정보등록의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 절차,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통지 방법과 절차,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4조의2 및 제9조 신설)

1)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국하였을 때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표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함.

나.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통지 절차 등 마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은 법무부장관이 등록한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함. 다만,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1)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최소등록기간 경과 여부 및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2)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라.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10조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무부장관,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3. 29.
- 2016. 3. 31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서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재원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성재원 추가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제2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를 신설)

3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3. 14.
-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시

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426호, 2016. 12. 20. 공포, 2017. 3. 21.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상담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10호, 2017. 3. 21. 시행)의 개정을 통해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조문 순서가 변경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임

39.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3. 14.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일부를 개정함

4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3. 20.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14. 8.) 및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 16. 3.) 됨에 따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

41.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4. 18.
-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민간자격 변경등록 근거조항을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법 제17조의2로 변경함

42.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3. 9. • 마감일자 : 2017. 4. 18.
-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자격기본법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규정 신설에 따라 동 조항의 교육부령 위임규정에 대한 변경등록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 2제1항)
- 나. 자격기본법 제18조 제1호 규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규정하여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상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6제1항, 제2항)

4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4. 19.
-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구현을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의무, 금지행위 및 기록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27호, 2016. 5.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고정시설로서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야생동물 등을 보유한 동물원과 전체 수조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수조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족관 등으로 등록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함
-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 구체화(안

제3조, 제4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시설, 전문 인력, 보유생물 및 운영계획 등 등록하도록 구체화함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안 제5조, 제6조)

연간 30일 이상 개방하도록 하고, 연속해서 6개월 이상 휴원 및 폐원 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함

라. 자료제출의 구체화(안 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률 제10조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일수 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8조)

등록요건에 따른 운영계획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함

44.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4. 19.
-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됨에 따라 첨단·친환경 양식기법을 활용한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장구역의 한계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 어장구역의 한계를 5 이상 20ha 이하에서 5 이상 60ha 이하로 완화

4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4. 19.
-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제정(' 16. 5.29. 제정, ' 17. 5.3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46.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4. 19.

○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자법」이 제정(법률 제14205호, ' 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및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책 등으로 함.

다. 점자출판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자출판물의 제작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점자출판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47.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4. 19.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1.4. 법률 제1452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탁기관 및 예탁 보조금 지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5년 초과 보유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타 사업과의 형평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중

개량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조금 예탁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자 등이 거래증빙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그 거래증빙 자료가 검증되면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함
- 나. 중앙관서 장 등이 보조사업자의 선정·자격관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것 외 별표 5에 열거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중앙관서 장 등은 금융·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조회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상품명, 계좌번호, 금융·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 라.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 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보조금의 교부 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마.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실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 및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 별표 1 제112호 하수관로 정비 비고란 중 “개량”을 “개량(교체·보수)”로 하고, 지역별 기준보조율을 광역시 10%, 도청소재지 20%, 시·군 30%에서 광역시 20%, 도청소재지 30%, 시·군 50%로 조정함

48.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3. 15.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 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신선한 양파 기준 20,645톤에서 70,645톤으로 늘리는 등 17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4. 20.

○ 신용평가사의 등급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공시 실무상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5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4. 20.

○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평가정보가 늦장 우려 없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의 등급 산정 등 관련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고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제3자 의뢰평가, 신용평가사 선정신청제 등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51.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4. 20.
- 자본의 변동이 있으나 다른 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자본 변동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면제근거 신설
자본의 변동이 있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배당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4. 19.
- 시·도지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36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의 의미를 명확히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가. 지역발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 범위(안 제30조의2)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이전지역으로 함을 명시

53. 도로의 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4. 19.
-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하고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피점검기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 교량·터널·비탈면 등 주요시설물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
 - 도로의 포장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충전시설, 줄음쉼터, 휴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의 개량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등
- 나.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 조정 등 시정요구(안 제13조)
 - 봄·가을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고, 피점검기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

54.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3. 10. • 마감일자 : 2017. 3. 20.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인상, 확대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 가. 심해잠수의 잠수특수성을 고려한 위험근무수당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분리)
- 나. 잠수사와 동일한 위험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 의무요원에 대

한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신설)

다. 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수당 가산금 지급(안 별표 1, ‘비고’ 란의 대상 확대)

라. 잠수함정 승무원 중 하사 계급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안 별표 2 지급액 일부 수정)

55.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14. • 마감일자 : 2017. 4. 24.

○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시공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며,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공개모집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조합총회 의무 의결사항 추가(안 제7조제5항제8호 신설)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등록사업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나.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구체화(안 제7조의2 신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를 추가함.

다.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등(안 제7조의3 신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

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라.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등(안 제7조의4 신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원모집 신청자에게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따라 게시공고하도록 하며, 별도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공보증서의 범주(안 제11조의2 신설)

시공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5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14. • 마감일자 : 2017. 4. 24.

-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시공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며,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공개모집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등록사업자의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안 제14조제3항제3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확보하여야 할 사무실의 면적기준(22제곱미터

이상)을 삭제하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추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나. 조합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 등(안 제20조제2항제4호의2 및 제3항) 조합 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퍼센트(창립 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 제명 탈퇴 시 이미 납부한 비용의 환급시기 및 환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안 제26조의2 신설)

시공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의 보증금액 비율을 총 공사 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57.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3. 16. • 마감일자 : 2017. 4. 27.

○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상 제조자 등이 적합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여금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이 있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적합성 인증 신청 시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원기능 부여 (안 제12조 제1항 단서 신설)

적합성 인증 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 원장은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제조자등의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공인기관 인증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안 제13조 제3항 제2호 단서 신설)

공신력 있는 해외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적합성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세부요건을 적합성인증협의체 협의대상에 추가함.

- 다. 산업융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1조 제3항 제3호 신설)
- 제조사 등의 적합성인증 제도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위탁대상기관 확대 (안 제38조 및 별표 5)
-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동법에서 지정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추가함.

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16. • 마감일자 : 2017. 4. 11.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5.29.)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업무위탁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 1)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주기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 2) 신고 업무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5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16. • 마감일자 : 2017. 4. 11.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5.29.)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절차 및 실태 조사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세부절차(안 제31조의3)
 - 1)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시 제출 서류
 - 2)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처리 방법 및 신고결과 보고

60.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3. 16. • 마감일자 : 2017. 4. 25.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자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문화 협력위원회’를 관계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22조 개정)
 - 위원장 2명(장관, 민간위원 1명)에서 위원장은 문체부 1차관으로 변경
 - 위원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 * 민간위원 위촉 조항 삭제→ 시도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조항 추가

6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3. 16. • 마감일자 : 2017. 4. 25.
- 2015.11.30.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이하 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6.2.9일 ARMO가 국제기구로 공식 전환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금융기구’에 AMRO를 추가해 AMRO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국제금융기구’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안 제2조제1항제16호 신설)

62.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16. • 마감일자 : 2017. 3. 20.
- 도로법 제68조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민간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신설되었기에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73조제3항제1호가목)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9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나.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 명확화(안 부칙 제6조)

영 제2775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업무상 혼란 예방

63.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3. 16. • 마감일자 : 2017. 4. 26.

○ 지진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주택 소파(小破) 지원기준을 법제화 하고, 사유 시설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계지원비를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종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대원수에 따라 생계지원비 차등 지급 (안 제4조 별표1)

나. 주택피해 복구시 내진설계가 반영되면 자부담 면제 (안 제4조 별표1)

다. 지진피해에 한하여 주택 소파 지원기준 신설 (안 제4조 별표1)

라. 어망·어구 지원대상 결정시 건조가격 상한액 삭제 (안 제4조 별표1)

마.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 (안 제4조 별표1)

바. ‘피해신고서’ 서식에 피해자 정보 외 명의자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안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신고서)

6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17. • 마감일자 : 2017. 4. 10.

○ 수중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관리, 수중레저교육자의 교육, 수중레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종사자 교육 등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야간안전관리(안 제4조)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단독으로 입수하지 않으며 수중레저기구에 탐조등(서치라이트)을 구비하도록 하고 원거리의 경우 사전에 신고한 예정귀환시간을 준수토록 규정함.

나.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등(안 제7조)

법 제11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중 수중레저교육자의 배치 및 탑승에 관한 사항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용하며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치들을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생략 가능토록 규정함.

다.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안 제8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식 교육 표준 및 지침(또는 그에 갈음하는 단체 등의 표준 및 지침)에 근거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및 인정단체는 교육 실적 등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규정함.

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안 제10조)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요건을 별표로 정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1년 이상(사업기간 내 계절적 휴업 미 포함) 휴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함.

마. 종사자 교육 등(안 제12조)

법 제20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인정단체가 실시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응급조치 또는 품질 등에 관한 교육연수를 격년으로 실시토록 하며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종사

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6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3. 17. • 마감일자 : 2017. 3. 20.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제24조의2제1항('16.3.29. 개정, '17.3.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6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3. 17. • 마감일자 : 2017. 4. 27.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수령 편의 제공을 위해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이 법제처 권고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여 수험자 비용 부담 최소화 및 환불규정 표준화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시중 물가 동향을 고려하여 적정 비용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절차 개선(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급신청서 작성 없이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개선(안 제23조제3항)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시 법제처 권고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기준 보완(안 별표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인상 조정

라. 별지 서식 신설 및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급신청서 작성 없이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개선

6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3. 17. • 마감일자 : 2017. 4. 27.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험 공고 방법과 수리기술자 자격 시험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와 면접 비중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6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3. 17. • 마감일자 : 2017. 4. 27.

○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 작성에서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6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6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3. 17. • 마감일자 : 2017. 4. 20.

○ 지정기간이 경과한 법정기부금단체를 정비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

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전문모집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7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17. • 마감일자 : 2017. 5. 1.
-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정보가 추가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을 강화하고자 함